

# 2024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재심의 회의록

2024.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4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재심의
회의일시	2024. 3. 13.(수) 10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장, 이종수 위원, 원은자 위원, 권현정 위원</li> <li>○ 배석 이동판 정보공개팀장(간사), 박소영 주무관(서기)</li> </ul>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9 : 2021년, 2023년 홍대입구 등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및 2023년 천호, 송파 버스정류소 스마트 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li> </ul>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9 : 기각</li> </ul>

1. [의안번호 2024-9] : 2021년, 2023년 홍대입구 등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및  
2023년 천호, 송파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 보고서

○ 000 위원(장)

오늘 심의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이의신청 1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의안번호 제 2024-9호이며, 소관부서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하여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4-9호** 버스정책과 소관 이의신청건 재심의를 상정합니다.

○ 000 위원(장)

주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024-9호는 지난 3월 7일에 저희가 심의를 진행을 했고, 버스정책과에서 제시했던 근거가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돼서 오늘 재심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버스정책과에서 제시한 부분은 7호에 따라서 비공개 건의를 하신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생산한 업체에서 의견서도 제시하셨는데요.

세 가지 정도의 사유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영업·경영상 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라든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체에서 제시했던 의견서도 나름 합리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아서 저는 별달리 질

문할 사항은 없는데요.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용역보고서를 서울시가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는 부분이 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지금 업체의 이 의견서가 그 부분과 조금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시하셔서 7호로 제시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보고서의 저작권은 서울시로 귀속이 되는 거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더 질의사항 없습니다.

○ 000 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금방 000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각종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여러 어떤 선례들을 다루면서 저작권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 부분은 그대로 존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도로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는 제3자에 해당되는 업체의 의견서가 제출이 됐고, 지금 주심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서에서 영업상 비밀 또는 경영상 비밀을 주장하는 나름 입장이 합리적이다라고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

기 업체를 제가 웹사이트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 업체의 형태가 출판인쇄업으로 돼 있어요. 혹시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 000 주무관

국가에서 원가계산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인된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그런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0 위원(장)

뭐 이런 원가계산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공개입찰을 했고, 그런 자격이 있는 거는 확인됐으니까 이 용역사업을 발주를 했겠지요.

○ 000 주무관

그거를 따로 발주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000 위원(장)

000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 000 위원(장)

이상입니다.

○ 000 위원(장)

혹시 000, 000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 000 위원(장)

저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특별히 없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의견 말씀드리면 7호에 따라서 기각하는 것으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기각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7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진행을 했고요. 7호에 따라서 이의신청건을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4-9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